

‘26. 7.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회 계 과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 안	2026-53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7.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김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 특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상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직무발명의 신고, 권리승계,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보상금의 관장 및 발명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시와 발명자의 특허 출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직무발명의 시 승계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시유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3조)
- 등록보상금, 지식재산권 처분보상금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5조)
- 처분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18조)
-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등록 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보상금의 지급 및 불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제22조)
- 자유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 비밀유지 및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 제25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 제27조)

3. 참고사항

-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부
- 다. 예산수반 여부 : 여
-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여
- 마.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 바.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 여
-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자. 입법예고 기간 : 2026. 5. 8. ~ 5. 28.(20일간)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라.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사. 관련 법령 발췌서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발명진흥법」 제2조·제10조·제15조, 「실용신안법」 제2조, 「특허법」 제2조·제42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0조

아.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시·군 조례 제정 현황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 군산시

자. 방침결정문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김제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시유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특허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

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직무발명의 처분으로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권리승계) 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시는 해당 발명자가 가진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관장)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관장한다.

제7조(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3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시의 특허 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 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가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기 전에는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 또는 특허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김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시유지식재산권 등록) ① 직무발명이 시에 승계되기로 결정된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가 시유지식재산권을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유지식재산권 등록 통지)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으로의 등록을 마친 후 시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디자인권 30만원
5.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처분수입금의 처리) 시유지식재산권 등의 처분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제17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시의 정

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예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른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과 관련하여 발명자 또는 발명자가 속한 기관이나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0조(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방, 표절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또는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2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4조(비밀유지 의무)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자신이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와 관련하여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14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5조(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 지급), 제21조(보상금의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액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4. 작성자 : 재산관리팀장 김 유 진

회계과장 김 재 훈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원안 동의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김 제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17)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회계과-13628 (2026.5.12.) 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6A전북김제017) 1부. 끝.

교 육 가 족 과 장

서명생략

주무관	이미애	여성가족팀장	최남	교육청소년팀장	황주애	장	대결 2026. 5. 15. 교육가족과 과 전결
협조자							
시행	교육가족과-17474	(2026. 5. 15.)		접수	회계과-14151	(2026. 5. 15.)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6	팩스번호	063-540-4016		/ taa.jvn@korea.kr		/ 비공개(5,7)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전북김제017			
정 책 명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류수정	전화번호	063-540-313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5월 1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회계과)	I. 개 요 ☐ 개정 목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김제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직무발명의 신고, 권리승계,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 보상금의 관장 및 발명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시와 발명자의 특허 출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 직무발명의 시 승계 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유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 등록보상금, 지식재산권 처분보상금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 처분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8조) ○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등록 전의 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보상금의 지급 및 불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제22조) ○ 자유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비밀유지 및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제25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제27조) II.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5. 성별 균형 참여(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없음 7. 성별 통계 관련 조항 : 해당없음 8. 성별 통계 개선안 : 해당없음			
종합 검토 의견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검토한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과 관련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살펴보니 성별 균형 구성을 명시하고 있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5월 15일 김제시 복지환경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이미애/063-540-6906) 회계과장 귀하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회계과-15297

제 목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 보고

회계과-13626(2026.5.12.)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에 따른 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2. 조회기간 : 2026. 5. 12. ~ 5. 20.(9일간)
3. 조회내용 : 소관 자치법규 위반 여부 등 조항 검토
4. 조회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제출 의견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끝.

2026. 5. 27.

주무관

황수정

재산관리팀장

김유진

회계과장

김재훈

협조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문서번호 회계과-15762

제 목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보고

회계과-13031(2026.5.7.)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5. 8. - 5. 28.(20일간)
3. 예고방법 : 김제시 시보(공고 제2026-608호)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제출 의견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끝.

2026. 6. 1.

주무관

류수정

재산관리팀장

김유진

회계과장

김재훈

형조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8353(2026.6.22.)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2026. 6. 18.(목) 09:00
2. 개최장소 : 부시장실
3. 참석위원 : 10명 *대리출석 2명(경제진흥과장, 도시과장)
4. 심의안건 : 총 8건(조례 7, 규칙 1)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8건

연번	심의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의결결과
계	총 8건 (조례 7, 규칙 1)			
1	2026-21	행정지원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22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23	회 계 과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원안가결
4	2026-24		김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026-25	투자유치과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026-26		김제시 산업단지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7	2026-27	환 경 과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6-28	시립도서관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환경과장, 시립도서관장

주무관	이재현	의회법무팀장	이해라	기획팀장	대결 2026. 6. 22. 기획감사실장	전결
협조자					오경준	
시행	기획감사실-8398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8	/ kirus@korea.kr	/ 부문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획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사람(연구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9.>

1. 연구자: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전문개정 2010. 8. 17.]

발명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6. 8., 2013. 7. 30., 2015. 5. 18., 2023. 1. 3., 2024. 2. 6.>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5의2. “공익변리사”란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한다.
6. 삭제 <2024. 2. 6.>

7. 삭제 <2024. 2. 6.>

8. 삭제 <2024. 2. 6.>

9.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란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나. 「변리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업

다.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 및 기술적 우수성을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업

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거래행위를 중개·알선하는 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10.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발명 등의 평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이하 “배치설계”라 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

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2025. 10. 1.>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2. 11. 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2. 11. 15.>
-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 ⑦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실용신안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21.>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특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2. 10., 2025. 1. 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6. 11.]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1., 2025. 10. 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2014. 6. 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4. 6. 11.>

⑦ 삭제<2014. 6. 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6. 11., 2025. 10. 1.>

[제목개정 2014. 6. 11.]

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 특허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
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4. 6. 11.]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④ 제138조, 「실용신안법」 제32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외의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⑦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9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발명자의 출원 등)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8., 2024. 11. 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8., 2024. 11. 12.>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8. 8. 28.]

제20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 보상금과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여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11. 12.]

[용어정리]

- **실시권** :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의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음.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 특허법에서는 실시허락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전용실시권** : 지식재산권 권리자 이외의 자가 권리자와의 계약에 의해 내용·지역·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통상실시권** :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와의 실시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행정청의 강제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 특허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독점권'이 없다는 점에서 전용 실시권과 차이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시·군 조례 제정 현황(제정 11, 미제정 2)

시군명	담당부서	조례명	제정현황		비고 (시행일)
			여	부	
전주시	회계과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		2024.06.14
군산시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2006.11.15
익산시	기획예산과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		2026.02.25
정읍시	미래산업과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2021.10.01
남원시	기획예산과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		2026.04.07
완주군	-	-		○	-
진안군	기획홍보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2020.12.31
무주군	기획조정실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		2020.12.10
장수군	-	-		○	-
임실군	경제교통과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2016.04.01
순창군	기획예산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2025.12.24
고창군	기획예산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2025.07.01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		2012.12.28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군산시)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정) 2006.11.15 조례 제720호

(일부개정) 2023.11.15 조례 제21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 2.“자유발명”이라 함은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 3.“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 승계) ①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의 관장)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시장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

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 ①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군산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11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 시장은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마다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50만원
2. 실용신안권 30만원
3. 디자인권 20만원

제15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시장은 유상으로 시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

시료의 연간 수입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시유평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연간 수입의 100분의 50 범위내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심의회 설치) ①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직무발명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군산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군산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산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2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산시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3조(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직무발명상황 보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승계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도 제13조 내지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부 칙(2023.11.15.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침결정문

문서번호	회계과-12859	주무관	팀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6. 5. 6.	류수정	김유진	김재훈	류수정	이현서	김성기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예산팀장 김재훈 의회법무팀장 이현서 기획감사실장 이병호					

김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 계획안



자 치 행 정 국
회 계 과